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4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
(2008년 10월 2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보건관리과장 종석목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,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사업기준 개정내용의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행기능에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와 주간보호프로그램의 운영을 신설함.(안 제3조)
- 센터의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함.(안 제4조)
- 회계처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개정함.(안 제8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?</p>	<p>○ 자문위원회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로 대체하고,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른 내부 운영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임.(보건관리과장)</p>
<p>○ 위탁기관이므로 기관 운영위원회 성격인 자문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한다.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가 있으므로 자문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</p>	<p>○ 법령상 의무규정이 아닌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내부 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안임.(보건관리과장)</p>
<p>○ 자문위원회를 존치하되, 그 기능을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,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?</p>	<p>○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.(보건관리과장)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이므로 예·결산 등 기관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함. 따라서 실질적

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존치하여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, 내부적인 회의체 성격의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16호
의결 년월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10. 21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이며, 예·결산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존치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.
제4조(위원회 설치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다만,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다만,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.』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에 따라 <u>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</u> 설치·운영 및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</u> 2. <u>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</u> 3. <u>대상자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</u> 4. <u>정신건강전화 운영</u> 5. <u>가정방문·내소·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</u> 6. <u>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</u> 7. <u>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·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</u> 8. <u>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</u> 9. <u>보건소, 시·구청, 동주민센터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 자문</u> 10.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사업</u> 	<p>제3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신보건 자원의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</u> 2. <u>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정신보건 자원의 조정</u> 3. <u>대상자 발견·등록·사례관리 및 의뢰체계의 구축·운영</u> 4. <u>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</u> 5. <u>정신건강전화의 운영</u> 6. <u>가정방문·내소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</u> 7. <u>주간보호프로그램의 운영</u> 8. <u>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</u> 9. <u>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 예방사업의 추진</u> 10. <u>정신질환 편견의 해소에 관한 홍보</u> 11. <u>정신보건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</u> 12.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기본</u> 	<p>제3조(센터의 업무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</p>	<p>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특수사업의 추진</p> <p>1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의 추진</p>	
<p>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	<p>제4조(위원회 설치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그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
<p>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금액(경비보조를 말한다)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협약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사업의 위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회계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,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8조(회계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.</p>	<p>제8조(회계 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신보건 자원의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2.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정신보건 자원의 조정
3. 대상자 발견·등록·사례관리 및 의뢰체계의 구축·운영
4.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
5. 정신건강전화의 운영
6. 가정방문·내소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
7. 주간보호프로그램의 운영
8.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
9.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
10. 정신질환 편견의 해소에 관한 홍보
11. 정신보건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
1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기본 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특수사업의 추진
1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업의 추진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다만, 다만,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계약”을 “협약”으로 한다

제8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의
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신보건 자원의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2.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정신보건 자원의 조정
3. 대상자 발견·등록·사례관리 및 의뢰체계의 구축·운영
4.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
5. 정신건강전화의 운영
6. 가정방문·내소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
7. 주간보호프로그램의 운영
8.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
9.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
10. 정신질환 편견의 해소에 관한 홍보
11. 정신보건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
1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기본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특수사업의 추진
1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업의 추진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다만, 그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
대행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계약”을 “협약”으로 한다

제8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의
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에 따라 <u>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</u> 설치·운영 및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</u> 2. <u>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</u> 3. <u>대상자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</u> 4. <u>정신건강전화 운영</u> 5. <u>가정방문·내소·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</u> 6. <u>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</u> 7. <u>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·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</u> 8. <u>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</u> 9. <u>보건소, 시·구청, 동주민센터, 학교, 사회복지시설,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자문</u> 10.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사업</u> 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</u>----- -----</p> <p>제3조(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신보건 자원의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</u> 2. <u>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정신보건 자원의 조정</u> 3. <u>대상자 발견·등록·사례관리 및 의뢰체계의 구축·운영</u> 4. <u>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</u> 5. <u>정신건강전화의 운영</u> 6. <u>가정방문·내소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</u> 7. <u>주간보호프로그램의 운영</u> 8. <u>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</u> 9. <u>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</u> 10. <u>정신질환 편견의 해소에 관한 홍보</u> 11. <u>정신보건 관련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교육</u> 12.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기본</u>

현 행	개 정 안
<p>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</p> <p>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금액(경비보조를 말한다)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회계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,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」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</p>	<p>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특수사업의 추진</p> <p>1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의 추진</p> <p>제4조(위원회 설치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그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 <p>제5조(사업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협약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계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.</p>